

##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 제10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 정책의 수립 및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등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조직)** ① 전세사기피해지원단(이하 “지원단“이라 한다)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(이하 “단장“ 이라 한다)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, 단장 밑에 피해지원총괄과, 전세피해조사과, 조사지원팀을 둔다.

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,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, 전세피해조사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, 조사지원팀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보한다.

**제3조(구성)** ① 지원단의 단원은 국토교통부소속 공무원 및 파견공무원과 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, 공공기관·정부 유관단체·민간단체·연구기관 또는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·직원 및 연구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지원단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.

**제4조(사무분장)** ①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.

② 피해지원총괄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2.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령 및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
3. 전세사기 관련 대책의 이행현황 점검 및 예방 정책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#### 4. 삭제

5. 전세사기 관련 대책에 대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
6.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기타 전세피해 지원을 위한 서비스의 운영 및 확대에 관한 사항
7. 전세사기피해 지원제도의 홍보에 관한 사항
8. 경공매 대행 서비스의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9.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
  - 가. 위원회 심의기준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- 나. 위원회 운영 세칙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  - 다. 위원회 상정 안건의 취합 및 관리
  - 라. 위원회 일정, 분과위원회의 구성, 위원의 위촉 및 해촉
  - 마. 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등 예산의 집행 및 예·결산

바.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와 심의자료 등의 관리

사. 기타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의 이행

10. 국회 등 대외기관 업무에 관한 사항 총괄

11. 인사·서무·보안(일반)·감사·통계 등에 관한 사항

12.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등에  
관한 사항

③ 전세피해조사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(다만, 관할 지역의 구분은 필요한 경우 단장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).

1. 전세사기피해자등의 결정 및 경·공매 유예 조치(긴급) 등을 위한  
추가 조사 등 다음 각 목의 사항

가. 시·도지사의 피해사실 조사결과의 검증 및 검토의견의 작성 등  
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추가 조사

나. 이의신청의 접수 및 재심의를 위한 추가 자료의 조사, 대상자 소  
명의견 등의 검토

2. 전세사기피해자등의 결정 및 경·공매 유예 조치(긴급) 등을 위한  
위원회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

3. 시·도지사의 피해사실 조사 등에 관한 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4. 수사당국, 금융기관 등 전세사기 피해사실 조사에 관한 관계기관과  
의 협조에 관한 사항

5. 경·공매 유예 조치(긴급)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6. 전세사기 피해조사 매뉴얼의 작성 및 관리, 교육에 관한 사항
7. 전세사기 피해 관련 통계자료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④ 조사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경·공매 유예 조치(긴급)를 위한 피해사실 조사결과의 검증 및 검토의견 작성 등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추가 조사에 관한 사항
2. 경·공매 유예 조치(긴급) 등을 위한 위원회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
3. 삭제
4. 삭제
5. 경·공매 유예 조치(긴급)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
6.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의 송달 등 관리 및 관계기관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
7. 전세사기 피해자 조사 및 관리시스템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
8. 전세사기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주택 임대차 시장 동향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

**제5조(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)** 단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·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**제6조(조사·연구 및 여론의 수렴)** ① 단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·단체 등에게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, 세미나의 개최,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.

**제7조(수당 등)**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단에 파견된 자와 제5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·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8조(운영세칙)**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단장이 정한다.

## 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정원(제3조제3항 관련)

구 분		계	고위(나)	4급	4.5급	5급	6급 이하
계	정 원	35	1	2	1	11	20
	(별도정원)	(12)	(1)	(2)	(1)	(6)	(2)
단 장	정 원	1	1				
	(별도정원)	(1)	(1)				
피해지원 총괄과	정 원	11		1		4	6
	(별도정원)	(4)		(1)		(3)	
전세피해 조사과	정 원	15		1		5	9
	(별도정원)	(3)		(1)		(1)	(1)
조사지원팀	정 원	8			1	2	5
	(별도정원)	(4)			(1)	(2)	(1)

※ 별도정원 5급 6명 중 1명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고, 6급 이하 2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 1명 및 국세청 소속 공무원 1명으로 각각 충원한다.